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기 상 관 측 표 준 화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측기와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관측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을 “「기상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강수량계
3. 기압계
4. 습도계
5. 풍향계
6. 풍속계
7. 일사계
8. 일조계
9. 적설계

10. 증발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4와 같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일 것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기상측기틀 관측기관의 관측용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13조제1 항을 위반하 여 검정을 받지 않고 기상측기틀 관측기관의 관측용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28조제1 항제2호	500	700	1,000
--	------------------	-----	-----	-------

[별표 3]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시설 및 장비	<p>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다음 각목의 장비를 각각 갖추어</p> <p>가.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한 기준기</p> <p>나.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따라 시험·분석할 수 있는 장비</p>
2. 기술인력	<p>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시험책임자 1명과 시험요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갖추어</p> <p>가. 시험책임자(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li> <li>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상측기 시험 또는 검정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상측기 시험 또는 검정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시험 또는 검정관련 실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시험 또는 검정관련 실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정기</li> </ol>



	<p>구가 고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기술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사람</p> <p>나. 시험요원(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li> <li>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험 또는 검정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시험 또는 검정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시험 또는 검정관련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시험 또는 검정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정기가 고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실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사람</li> </ol>
--	--

비고

1. 위 표 제1호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 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형식승인 또는 검정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관련 분야”란 기상, 대기, 물리 등 기상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 기계, 전자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별표 4]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등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검정요원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p> <p>가.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경력</p> <p>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p> <p>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검사업무경력</p>
2. 검정설비	<p>다음 각 목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p> <p>가.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한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를 갖출 것</p> <p>나. 기상측기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2. (생략)</p> <p>3. 「기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u>40시간 이상</u> 받은 사람</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기상법」 제35조에 따른 <u>교육을 -----</u></p> <p>4. <u>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u> 받은 사람</p>  <p><u>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u></p> <p>1. <u>온도계</u></p> <p>2. <u>강수량계</u></p> <p>3. <u>기압계</u></p> <p>4. <u>습도계</u></p> <p>5. <u>풍향계</u></p> <p>6. <u>풍속계</u></p> <p>7. <u>일사계</u></p> <p>8. <u>일조계</u></p>

<신 설>

<신 설>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법 제 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기압계
3. 습도계
4. 풍향계

9. 적설계

10. 증발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삭제>



정신청을 받은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생략)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

④ 그 밖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 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검사업무경력

2. 다음 각 목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가.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4와 같다.

<삭 제>

<삭 제>

나. 기상측기 검정업무 수행  
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  
·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  
할 것

<신 설>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  
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생략)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일 것

②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  
-----  
-----  
-----.

1. (현행과 같음)
2.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상관  
측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  
일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연 락 처	(02) 2181 - 0713